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3-30
----------	-------

제출년월일 : 2023. 3. 16.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마포구 내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설치, 등록, 운영기준(안 제3조 ~ 제5조)
- 다. 공동거주시설의 지원계획 수립, 지원, 점검 관련(안 제5조 ~ 제8조)
- 라. 지도점검, 입소비용, 다른 조례의 준용(안 제9조 ~ 제11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3. 2. 23. ~ 3. 15.(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해당 없음
- 3)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가족행복지원과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 5) 제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2023. 3. 16.): 수정의결

원안	수정안
<p>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지원하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2. 시설 운영의 적정성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9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지원하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2. 시설 운영의 적정성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홀로 생활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사람
 - 다. 그 밖에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동거주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3. “공동거주시설”이란 5명 이상의 독거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독거노인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거주시설의 등록) ① 공동거주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구에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거주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시설의 운영) 구에서 직접 설치한 공동거주시설의 경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거주시설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재원확보 방안
4.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공동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전기요금·공동전화요금 등 공동거주시설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과금
2. 냉·난방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거주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시설 거주 노인이 3개월 이상 5명 미만인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 공동거주시설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
4.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제9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지원하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2. 시설 운영의 적정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공동거주시설의 입소비용) ①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입소자로부터 시설 이용에 따른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입소비용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공동시설 입소비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규정에 준하여 부과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제5조(운영), 제7조(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2023. 1. ~ 2027. 12.(60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	-	-	-	-	-
	세출						
	시비보조금	-	-	-	-	-	-
	구비보조금	1,722,919	59,600	61,388	63,229	65,124	1,972,260
	소계(b)	1,722,919	59,600	61,388	63,229	65,124	1,972,260
□ 총비용(b-a)		1,722,919	59,600	61,388	63,229	65,124	1,972,260

- 비용 : 관리비, 인건비(1명)

4. 재원조달 방안

5. 덧붙이는 의견 : **구체적인 세입 및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어르신동행과 윤현
연락처	02-3153-8865